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8 일

여 수 시 장 김우기



여수시 조례 제2272호

붙임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효행장려금 지원

제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효행 우수자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이상 노인의 부양자
3.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부양자

제9조의 제목 “(효행 지원 등)”을 “(효행 장려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석 전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u></p>
<p>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효행장려금 지원</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8조(효행자 표창) ----- ----- -----</p> <p>1. <u>효행 우수자</u></p> <p>2. <u>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의 부양자</u></p> <p>3. <u>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u></p>

제9조(효행 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을 구성한 부양자

제9조(효행 장려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석 전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 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